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07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1월 11일
발 의 자 :정지권 의원(1명)
찬 성 자 :김호진, 성중기,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의원(9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변경하고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도시철도 내 위생, 방역에 관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안 제21조의 3)

나.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단하는 경우 운송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안 제21조의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지하철을”을 각각 “도시철도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여객의 권리와 의무) ①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여객은 도시철도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③ 여객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여객운송의 조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 도시철도를 ---------- ---------- -- 도시철도를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여객의 권리와 의무) ①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여객은 도시철도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③ 여객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4(여객운송의 조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

	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